

정기안전점검보고서

(사업장용)

사업장명	광주광역시 관광공사
점검일자	2025년 10월 16일

결			
재			

본 보고서는 산업재해예방을 목적으로 「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」 제20조 및 고용노동부 예규(제2024-231호)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서명과 사업주의 결재를 득하고 개선 필요사항에 대한 조치를 통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○ 사업장 개요

근로자현황		재해발생현황						
계	55명	연도	근로자수	재해자수			재해율(%)	
사무직	0명			계	사망	부상		직업병
사무직외	55명	전년도	51명	0	0	0	0	0.00
		당해년도	55명	0	0	0	0	0.00

○ 점검현황 및 기술지도 사항

【관리 및 작업장 등】

- 안전보건관리체제등(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선임, 관리감독자의 역할,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)
-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 및 관리, 게시
-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실시
- 산업안전보건법령 요지의 게시 등
- 위험성평가 실시(최초평가, 수시평가, 정기평가)
- 안전표지, 작업표준 및 안전수칙 등의 게시 및 준수
-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·제출 등
- 산업재해발생보고 및 통계의 유지·관리
- 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
- 유해·위험기계 등 안전검사, 안전인증, 자율안전확인 신고
- 폭발·화재 및 위험물 누출에 의한 위험방지
- 중량물 취급시의 위험방지, 보호구의 착용
- 작업시작전 점검 및 비정형작업에 따른 위험방지
- 작업장, 통로, 계단 및 정리정돈 상태
- 기타 안전·보건에 관한 사항(끼임재해 예방 등)

○ 중점 위험요인 3대 사고유형 8대 요인 기술지도 현장 반영 여부 확인

1. 추락

- 비계 : 외주작업자의 비계설치작업시 안전난간설치, 근로자 안전모, 안전대 착용
- 지붕위작업 : 지붕의 가장자리에 안전난간설치, 근로자 안전모, 안전대 착용
- 이동식사다리: 이동식사다리 작업시 전도방지지지대를 설치하고, 근로자의 안전모, 안전대등 안전보호구 착용 바람
- 고소작업대: 과상승방지장치, 안전난간설치상태유지, 근로자 안전모, 안전대 착용

2. 끼임

- 방호조치 : 현장 확인 결과 모터등 기계, 기구, 설비에 덮개가 설치되어 있음. 상시 제기능 유지바람
- LOTO : 기계, 기구, 설비의 비정형작업시 운전정지 및 전원을 차단하고 기동스위치 잠금조치, 안전표지판 설치 등 안전조치를 실시하시기 바람

3. 부딪힘

- 혼재작업 : 화물자동차, 지게차 작업시 신호수를 배치하고, 작업반경내 근로자 출입금지조치 철저히 바람
- 충돌방지장치 : 지게차의 경광등, 후진경보장치설치상태 확인 및 작업시 제기능 유지 바람

4. 안전수칙 지도

- 8대 위험요인 핵심안전수칙을 사내 게시판 등에 게시 및 TBM, 안전교육시간에 교육을 실시하여 근로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관리하시기 바람

[위험성 평가기준]

구 분	중대성(강도)			위험성 수준	관리기준	내 용
	③	②	①			
가능성 (빈도)	③	9(높음)	6(높음)	3(보통)	6~9(높음)	즉시개선 작업을 지속하려면 즉시 개선이 필요한 상태
	②	6(높음)	4(보통)	2(낮음)	3~4(보통)	개 선 안전보건대책을 수립하여 개선이 필요한 상태
	①	3(보통)	2(낮음)	1(낮음)	1~2(낮음)	현상유지 근로자에게 유해·위험 정보제공 및 교육 등이 필요한 상태

※개선 후 중대성의 크기가 변하지 않는 “3”인 경우 현상유지 가능

가능성(빈도)

- ③ 일반적 또는 반복적으로 발생
- ② 발생 가능성 있음
- ① 발생 가능성 거의 없음

중대성(강도)

- ③ 사망·중대한 상해 또는 생명을 위협하는 직업성 질병 초래 위험
- ② 의학적인 치료를 요하는 상해 또는 장애를 일으키는 질병
- ① 아차사고, 무상해, 응급조치를 요하는 상해 또는 질병 초래 위험

구분 (공정·설비·장소 등)	유해·위험요인	현재 안전조치	현재 위험성 추정 및 결정 (가능성x중대성)	위험성 감소대책	개선후 위험성 추정 및 결정 (가능성x중대성)
펌프실(2센터)	스프링쿨러 발전기 가동중 근로자의 회전부 신체 접근에 의한 끼임재해 발생위험	덮개	4(보통) 2X2	-동력전달부를 방호할수 있는덮개 설치 및 상대유지 -끼임주의 경고표지 부착 -가동중 동력전달부 등 위험부 신체임의접근금지철저	2(낮음) 1X2
펌프실(2센터)	스프링쿨러 주펌프 핸들 샤프트 돌출부에 의한 근로자 근접작업중 두부충돌재해 발생위험	위험성주지	4(보통) 2X2	-돌출부 끝단부에 보호대를 설치하여 충돌시 충격완화조치 실시.근로자 작업시 돌출부에 유의하면서 천천히 작업토록 관리	2(낮음) 1X2
펌프실(2센터)	점검발판 이동계단 이동중 근로자 부주의에 의한 전도재해 발생위험	논슬립	4(보통) 2X2	-계단의높이가1m이상인경우 안전난간설치 -근로자 이동시 한칸씩 천천히 오르내리도록 할 것	2(낮음) 1X2
소화가스실	휴대용연삭기를 이용한 연삭작업중 슛돌 파괴시 파편 비래위험	방호덮개	4(보통) 2X2	-방호덮개 설치상태유지 -작업전 슛돌의 이상유무확인.1분이상시운전 실시.보안경,귀마개,방진마스 크등 착용후 작업실시	2(낮음) 1X2
지하주차장	전기차충전소 벽면 분전반의 잠금장치 미실시 상태로 관계자외 근로자 임의 개방후 오조작 및 충전부 접촉에 의한 감전사고 발생위험	절연방호구	6(높음) 2X3	-충전부를 충분히 방호할 수 있는 절연방호구 설치 -잠금장치 실시후 열쇠는 담당자가 보관(관계자외 근로자 임의조작금지 철저)	3(보통) 1X3
제공자료 및 기타사항	교육교안(안전한일터프로젝트12대핵심안전수칙)				

점검자	대한산업안전협회 광주지역본부	촬영육	촬영중	사업장 확인	유승기	유승기
-----	--------------------	-----	-----	--------	-----	-----

화재위험작업 안전점검표

점검사항

「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」

○ 화재위험작업이란?

- 용접·용단 및 금속의 가열 등 화기를 사용하는 작업이나 연삭숫돌에 의한 건식연마작업 등 그 밖에 불꽃이 발생될 우려가 있는 작업

○ 관리감독자의 작업시작 전 점검 실시 여부(제35조제2항)

[별표 3] 14의2. 용접·용단 작업 등의 화재위험작업을 할 때(제2편제2장제2절)

- 가. 작업 준비 및 작업 절차 수립 여부
- 나. 화기작업에 따른 인근 가연성물질에 대한 방호조치 및 소화기구 비치 여부
- 다. 용접불티 비산방지덮개 또는 용접방화포 등 불꽃·불티 등의 비산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여부
- 라. 인화성 액체의 증기 또는 인화성 가스가 남아있지 않도록 하는 환기 조치 여부
- 마. 작업근로자에 대한 화재예방 및 피난교육 등 비상조치 여부

○ 위험물이 있는 장소에서의 화재위험작업 금지 여부(제239조)

○ 배관, 탱크, 드럼 등의 용기 내부에 잔존 위험물 확인 및 제거 여부(제240조)

○ 화재위험작업 시의 준수사항 이행 여부(제241조)

1. 환기가 불충분한 장소에서 산소를 사용하여 동풍 또는 환기를 하지 말 것
2. 가연성물질이 있는 장소에서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준수할 것
 - 가. 작업 준비 및 작업 절차 수립
 - 나. 작업장 내 위험물의 사용·보관 현황 파악
 - 다. 화기작업에 따른 인근 가연성물질에 대한 방호조치 및 소화기구 비치
 - 라. 용접불티 비산방지덮개, 용접방화포 등 불꽃, 불티 등 비산방지조치
 - 마. 인화성 액체의 증기 및 인화성 가스가 남아 있지 않도록 환기 등의 조치
 - 바. 작업근로자에 대한 화재예방 및 피난교육 등 비상조치
3. 작업내용, 작업일시, 안전점검 및 조체에 관한 사항 등을 서면으로 게시할 것

○ 용접·용단 작업에 화재감시자 지정 및 배치 여부(제241조의2)

○ 화재 또는 폭발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의 화기의 사용 금지 여부(제242조)

○ 다음 각 목에 대한 소화설비 설치 여부(제243조)

1. [별표7]의 화학설비 또는 위험물 건조설비가 있는 장소
2. 위험물이 아닌 인화성 유류 등 폭발이나 화재 우려가 있는 물질을 취급하는 장소

○ 흡연장소 및 난로 등 화기를 사용하는 장소에 화재예방 조치 여부(제245조)

○ 비상구의 설치 및 유지에 대한 적정성 여부(제17조, 제18조)

1. [별표 1]에 규정된 위험물질을 제조·취급하는 작업장에는 출입구 외에 비상구를 1개 이상 설치할 것
2. 비상구·비상통로 또는 비상용 기구는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유지할 것

(점검결과 기술지도 사항)

-용접·용단 작업등 화기취급시 불티비산방지판설치, 가연물,인화성물질 제거, 소화기 비치
-화재감시자 배치후 작업실시

2025년 10월 16일

황영욱

황영욱

사업장 확인

유승기

유승기